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안
번호

153

제출년월일 : 2003. 1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2004년도에도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규모 : 700억원(즉석식 350, 인터넷 350)
- 액면금액 : 500원, 1,000원, 2,000원
- 1등 당첨금 : 5,000만원(액면금액 500원/1매기준)
1억원 (액면금액 1,000원/1매기준)
5억원 (인터넷 추첨식 복권)
- 당첨금 지급한도 : 발행액의 51.5%
- 발행조건 : 정부의 복권정책에 따라 탄력적 적용

□ 발행근거

- 지방재정법제11조의 2
- 지방자치법제142조
-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제585호)

2004년도 전국자치부권 발행계획서

1. 발행개요

- 발행단체 : 전국16시·도 공동발행
- 발행매수 : 주식식·인터넷 ⇒ 140백만매 이내
- 발행액 : 700억원

2. 전국자치부권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발행형태	발행기간	발행회차	액면금액	발행매수	발행액	예상 판매액	예상 수익금
주식식	1월~12월	5회이내	500원~2,000원	70백만매이내	35,000	26,250	6,168
인터넷	1월~12월	3회이내	500원~2,000원	70백만매이내	35,000	21,000	4,935

* 발행횟수, 발행액, 액면금액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전국자치부권 발행계획

- 발행주체 : 전국자치부권행정협의회
- 판매지역 : 전 국
- 1등 당첨금 - 5천만원 (액면금액 500원/1매기준)
- 1억원 (액면금액 1,000원/1매기준)
- 5억원 (인터넷 추첨식 부권)

*당첨금 지급한도 : 발행액의 51.5%

- 액면금액 : 주식식 및 인터넷(매당 500원~2,000원)

*정부의 부권정책에 따라 발행조건 단력적 적용

- 판매목표액

(단위 : 백만원)

발행형식	발행액	판 매 액		예상 수익금	
합 계	70,000	47,250	67.8%	11,103	23.5%
주식식	35,000	26,250	75.0%	6,168	23.5%
인터넷	35,000	21,000	60.0%	4,935	23.5%

관련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② 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 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치벌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1.12.31]

●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외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외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8.31>

●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제정 1993. 3. 3 내무부령 제585호

개정 2000. 6.19 행정자치부령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에 대한 승인기준과 그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권발행의 승인기준) 법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에 대한 승인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복권발행의 승인절차)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20일까지(다만, 행사기념복권중 전년도에 복권발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발행예정일 4월전까지) 복권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복권발행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용계획서
3. 최근 2년간 복권의 회차별 판매실적(2년이상 복권을 발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복권발행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서 사본
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서 사본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복권발행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자치복권의 경우에는 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월 20일까지, 행사기념복권의 경우에는 발행예정일 3월전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 [충청북도 고시 제1995-36호, 1995. 4. 7]

제정 1995. 3.10 규약 제1호

개정 1997. 7.10 규약 제2호

개정 1998. 5.19 규약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자치복권발행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의 42번지 소재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관리실장으로 하고,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임원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97. 7. 10>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에 임원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승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계처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공제회에 위탁한 사무의 처리상황을 감사한다.

⑥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회계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파 직원을 둔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심사담당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복권발행관련사무의 대행기관선정 및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의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등에 관한 사항
3.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사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무협의회에 위임하거나,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제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 협의회의 개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실무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견과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방법등)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한 협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 협의회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미합의사항 조정등) ①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의회의 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 ①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은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익금을 배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사기념복권을 당해 행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판매수익금의 배분은 발행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사무처리등)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관계공무원의 참석 및 의견개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재무회계등)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계사무처리와 전국자치복권발행 사무처리에 원판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계사무처리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규약 개정) 이 규약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